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2.1.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을 추가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 함.

다.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안 제42조제4항)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사업으로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훈련 중 6개월 이상의 훈련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을 추가함.

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95조)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함.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하여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중 7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바. 사업주 금품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안 제98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함.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제4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공요청 자료로 보육영유아에 관한

자료,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입·퇴소관리
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킥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함.

자.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규정 마련(안 제104조의12제1항)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차.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카.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의무제공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시행(법 제118조제1항제7호·8호)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의 제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4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주”를 “사업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용한”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갓춘”을 “갓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중 “육아휴직등의”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로, “60일이 되는 날”을 “2개월이 되는 날”로, “육아휴직등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로, “60일이 되는 날”을 “2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같은 목 2) 전단 중 “육아휴직등”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사업규모별로”를 “매년”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을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을 “고시하는”으로, “육아휴직등을 사용한”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으로,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로, “육아휴직등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를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계속고용장려금”을 각각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훈련(6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정한다)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의 지원금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를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를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전단 중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을 “피보험자(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는 제외한다)”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2호 전단 중 “6개월까지:”를 “종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③ 제95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달: 각각 월 250만원
3.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세 번째 달: 각각 월 300만원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을 “제95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또는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로,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를 “제95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또는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서”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제104조의1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

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7을 제104조의18로 하고,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6까지를 각각 제104조의14부터 제104조의17까지로 하며, 제10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 ①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 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노무제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 및 노무제공대가)

제142조의2제4호라목 중 “관한”을 “관한 자료, 보육영유아에 관한 자료,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아동의 입·퇴소 관리에 관한”으로 한다.

제1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법 제77조의6”을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로 한다.

제145조의2제1항제19호의3 중 “법 제77조의6”을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제10조”를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3”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8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종전의 제9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은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거나(급여를 지급받을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제29조제1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3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8조의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 ----- ----- ----- -----. ----- -----사업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주----- -----.
1. 삭제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u>허용한</u> 사업주	2. ----- ----- ----- ----- ----- ----- ----- ----- <u>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u> -----
3.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이하 “유산·사산 휴가”라 한다) 또는 <u>육아휴직등을</u>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u>갖춘</u>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u>육아휴직등의</u> 시작일 전 <u>60일이 되는 날</u>	3. ----- ----- ----- ----- ----- ----- ----- -----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u>----- ----- ----- ----- <u>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u> ----- 가. ----- -- 1) ----- -----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u>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
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
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
우

2)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
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
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
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
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
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삭 제

다. (생 략)

②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육아
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등

----- 2개월이 되는 날
-----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

- 2개월 되는 날 -----

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다. (현행과 같음)

③ -----

의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
용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
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
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
휴직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
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
우 그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
기 고용안정장려금(이하 “대체인
력지원금”이라 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은 대체 인력채용에 따
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
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출산

- 매년 -----

--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자는-----

----- . 다만,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
정장려금은 자녀의 연령 등을 고
려하여 그 금액을 달리 정하여 고
시할 수 있다.

④ -----

-----고시하는 -----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 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한다)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 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 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 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 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 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 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 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u>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u>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 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생 략)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 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 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 기</u> ⑤ 1. (현행과 같음) 2.	나. (생 략)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 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분의 50 ⑥ (생 략)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비용 지원, 제26조에 따 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 의4에 따른 고정자 계속고용장려 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 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	- <u>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u> - -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u> - 가. (현행과 같음) 나. <u>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u>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 <u>고용안정지원금</u>

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령의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 실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7. ~ 9. (생략)

②

1. ~ 5. (현행과 같음)

6. ----- 고용
안정지원금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 훈련으로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성훈련
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
련의 지원금

2. 3. (생략)

<신 설>

⑤ (생략)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 제52조제1
항제13호에 따른 훈련(6개월 이
상의 훈련과정에 한정한다)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령」 제3조제1항제1호-----

2. 3. (현행과 같음)

4.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의 지원금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

<단서 신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이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당하는 ----- .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항-----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

-----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

④ -----

-----.

1. -----

----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
2. -----

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	----- ----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 경우: 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신 설>	① ----- ----- ----- 피보험자(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 <후단 삭제>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이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5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한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 경우 두 번째 달: 각각 월 250만원 3.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경우 세 번째 달: 각각 월 300만원 ④ ----- ----- ----- -----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 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 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 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 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2. ----- 종료일까 지: ----- -----. -----.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 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 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 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 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육아휴직급 여의 지급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 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 ----- ----- -----

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 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 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 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 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 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에서 빼고 지급한다.	----- ----- ----- ----- ----- -----제95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 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 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 또는 제95조의2 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 는 금액을----- ----- -----제95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급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 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 액을 말한다) 또는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 자의 범위) ① ----- ----- ----- ----- -----

을 말한다.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 ----- ----- ----- ----- -----

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서 신설>	----- ----- ----- ----- ----- . 다
	만,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

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 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노무제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노무제공대가)

제104조의13 ~ 제104조의16 (생략)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04조의17 (생략)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04조의14 ~ 제104조의17 (현행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6까지와 같음)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104조의18 (현행 제104조의17과 같음)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 다. (생 략)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자료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 2의3. (생 략)

2의4.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접수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관한 자료, 보육영유아에 관한 자료,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아동의 입·퇴소관리 에 관한 -----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근로복지공단-----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

3. ~ 12. (생 략)

③ ~ ⑨ (생 략)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9의2. (생 략)

19의3.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10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20. ~ 24. (생 략)

25.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② ~ ④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 19의2. (현행과 같음)

19의3. 법 제77조의6, 제77조의7 -----

20. ~ 24. (현행과 같음)

25. 제10조,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13-----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